

학술지 편집 및 발간세칙

제정 2015. 8. 1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이하 “연구원(研究院)”이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부동산분석」 등 학술지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원칙)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부동산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3조(구성 및 선출)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2인을 포함한 위원 13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연구원장 1인과 원외 편집위원 1인이 공동으로 한다.

③ 원내 편집위원은 연구원장을 제외한 2인 이상 5인 이내로 하고, 연구원장이 임명한다.

④ 원외 편집위원은 대학교수 이상의 자격 또는 그와 대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지역, 대학, 전공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선출한다.

⑤ 원외 편집위원장은 원외 편집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⑥ 간사는 연구원 소속 직원중에서 연구원장이 지명한다.

제4조(편집위원회의 역할) ① 편집위원장은 학술지 편집과 발간에 따르는 제반 업무와 행정사항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②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투고논문의 심사의뢰
 2. 투고자와 심사자 간의 의견중재
 3. 심사결과에 대한 판정
 4. 최종게재논문의 선정
 5. 게재순서의 결정
 6. 학술지 발행부수의 결정
 7. 사이버 논문집 간행에 관한 사항
 8. 투고료 및 심사료와 게재료의 결정 등의 권한
 9. 이 세칙 및 「학술지 연구윤리세칙」에서 편집위원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 ③ 간사는 편집위원장을 보좌하여 편집위원회 회의록을 기록, 보관하고 학술지 발간에 따른 제반 회계 및 행정 실무를 관장한다.
- ④ 편집위원 및 간사는 편집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투고자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된다.

제5조(임기) ① 원내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연구원장의 임기에 따른다.

② 원외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간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5월, 11월 등 연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서면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임시회의는 편집위원장 1인 또는 편집위원 5인 이상의 소집요구에 의해 개최한다.

④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의 의장은 편집위원장 2인이 공동의장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편집위원장 1인 부재 시 다른 1인만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⑤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원외 편집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지고, 원외 편집위원장이 불출석시 원내 편집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회의비) 회의에 참석한 원외 편집위원에게 소정의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심사위원

제8조(선정 및 역할) ①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심사를 위해 전공분야가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3인의 심사위원을 비공개로 위촉한다.

② 각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정한 기일 내에 심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인의 전문분야와 심사할 논문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에 통고하여 적절한 심사자를 재선정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③ 논문의 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논문의 내용과 수준의 적정성에 대하여 제12조의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이 심사위촉을 받고 일정기간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에게 1차 독촉한다. 1차 독촉으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심사위원을 해촉하고 다른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해촉된 심사위원은 논문을 즉시 반송하여야 한다.

⑤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와 심사에 관련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⑥ 심사 의뢰 시에는 투고자의 인적사항을 일체 밝히지 않으며, 투고자에게도 심사위원의 신상 일체를 공개하지 않는다.

제9조(자격) 심사위원은 아래 사항을 만족하는 자로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한다.

1. 부동산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부동산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5년 이상의 실무 또는 연구경력을 갖춘 자
3. 연평균 1회 이상의 저서 발간 경력 또는 연구발표 경력자
4. 대학 또는 전문대학 전임강사 이상의 직위를 가진 자
5. 그 밖에 위 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 자

제10조(심사위원의 제척 등) ①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심사위원이 투고한 논문은 해당분야의 다른 편집위원이나 심사위원이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우리원 직원이 투고한 논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원 직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③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이 속한 기관의 구성원이 투고한 논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은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심사비) 공정하고 적법하게 심사를 마친 원외 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논문의 평가

제12조(심사기준) 투고된 논문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논문의 창의성
2. 내용전개의 논리성과 일관성
3. 연구방법의 적절성
4. 연구자료의 신뢰성
5. 분석 또는 평가의 타당성과 객관성
6. 연구결과의 학술적 기여도
7. 논문초록의 질적 수준

제13조(심사절차 및 방법) ① 심사의뢰는 투고자의 신상 및 인적사항을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을 삭제 후 심사위원에게 의뢰한다.

② 논문 심사위원은 심사논문과 함께 본인이 심사한 논문심사판정 결과 및 근거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심사의견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별표 4”의 양식) 사본 또는 심사의견을 모두 반영한 심사결과통보서(“별표 5”의 양식)를 투고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④ 심사내용은 저자 이외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⑤ 심사절차는 “별표 1”에 따라 진행한다.

제14조(심사기간) ① 논문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1차심사(15일 이내)와 2차심사(7일 이내)를 포함하여 1개월 이내에 심사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논문심사와 관련된 행정처리는 간사가 담당한다.
- ③ 논문수정을 의뢰받은 저자가 논문수정에 응하지 않거나, 제15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수정을 마치지 못했을 경우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단, 수정이나 심사에 오랜시간이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논문을 이월심사할 수 있다.
- ④ 심사위원을 다시 선정하여 1차심사할 경우, 심사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5조(논문 수정기간) ① 논문수정은 1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수정의 난이도를 고려해 기간을 가감할 수 있다.
- ③ 투고자에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수정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판정기준)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결과를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등급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1.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은 이를 수정 없이 게재한다.
2. ‘수정 후 게재’는 일부 자구의 수정이 필요하거나 내용상에 수정사항이 경미하여 일부 수정 후 게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편집위원회는 심사자가 제시한 수정의견을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투고자는 이를 적극 반영하여 논문을 수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투고자는 규정 기일까지 수정된 논문, 수정사항 요약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정 후 재심’은 수정사항이 중요하거나 논문의 내용이 대폭 보완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투고자는 심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논문을 수정한 후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재심 판정은 1차에 한하며 또 다시 재심 이하의 판정이 나올 경우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4. ‘게재불가’는 논문의 내용이 독창성이 없거나 합리적이지 못한 경우 또는 수준이 극히 낮아 논문집에 게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윤리를 위반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심사위원은 게재불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게재불가 논문은 다시 재심하지 않는다.

- 제17조(1차심사)** ① 1차 심사결과는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의 4단계로 판정하며, 심사판정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 ②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가 상이할 경우에는 차악(次惡)판정 원칙에 의해 최종 판정한다. 단, 나머지 두 심사 결과가 두 단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재심으로 판정한다.
- ③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게재불가 판정을 내렸을 경우 해당 논문은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 ④ 심사위원의 수정 요구에 저자가 동의하지 않고 이에 대하여 심사위원 상호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고 편집위원회가 판정한다.

- 제18조(2차심사)** ① 2차 심사의 경우 1차 심사위원이 다시 심사하며, 결과는 게재가,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등의 3단계로 판정해야 한다. 단,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게재가 판정을 한 심사위원과 게재불가 판정을 한 심사위원은 재심사시 심사위원에서 배제할 수 있다.
- ② 전항이외에 2차 심사와 관련한 사항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다.

- 제19조(최종심사 판정)** ① 최종 판정은 1,2차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되, 게재 대상 논문은 심사위원 2인 이상의 ‘수정 후 게재’ 이상 판정을 받은 논문으로 한다.

- 제20조(이의제기)** ① 심사위원의 심사의견, 수정요구 및 재심 이유에 대해 반론이나 서로 다른 시각 또는 견해를 밝히고자 하는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편집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투고자와 심사위원 간의 의견교환을 중재할 수 있다. 계속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는 경우, 그 주장의 타당성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 ③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최종판정에 대해서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5장 투고, 접수, 발간

제21조(투고논문의 범위) ① 「부동산분석」 등 학술지에 게재 가능한 논문은 부동산관련 분야의 이론 및 통계, 객관적 실증분석 연구논문으로 한다.

② 모든 논문은 「학술지 연구윤리세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논문의 작성 및 제출) ①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정한 「논문작성지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단, 제출한 논문은 반환하지 않는다.

② 논문의 내용에 관한 모든 책임은 필자에게 있다.

③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가 투고자에게 소정의 심사비를 납부토록 할 수 있다.

④ 논문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양식에 따라 논문 투고 신청서와 논문게재 요청서 및 저작권 위임동의서와 함께 제출한다.

제23조(논문저자표기) ① 논문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고 주저자·공동저자순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게재 예정 논문의 저자는 투고 시 논문의 연구자명 및 연구자 순서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24조(논문의 접수) ① 투고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연중 수시로 접수하며, 접수일은 논문이 편집위원회에 도착된 날짜로 한다.

③ 투고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위원회 간사는 7일 이내에 투고자에게 접수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④ 접수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논문작성형식과 제21조의 준수여부를 예비심사한 후, 규정을 준수하였다고 인정되었을 때 심사위원을 선임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⑤ 예비심사 결과 논문작성형식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21조를 준수하지 않거나 학술논문으로서의 구성 및 완성도가 심히 미달하는 경우는 편집위원회에서 반려사유서와 함께 반려할 수 있다.

제25조(논문의 게재) ① 논문의 게재여부 및 게재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논문은 심사완료시기로부터 가장 먼저 발간되는 학술지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나, 심사·편집일정에 따라 연기될 수 있다.

③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을 심사하여 게재여부 및 수정, 보완, 삭제를 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수정된 논문은 재심사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저자가 수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게재하지 않는다.

④ 최종 심사까지 ‘게재가’ 또는 ‘수정후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에 한해서 게재한다.

⑤ 투고논문이 ‘게재불가’로 판정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게재불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게재불가 논문은 반송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⑥ 게재 예정 논문은 편집을 위하여 구성, 도표, 그림 및 본문의 모양 등을 편집위원회에서 새롭게 조정할 수 있다.

⑦ 공동편집위원장은 ‘게재가’로 최종 결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 논문 게재예정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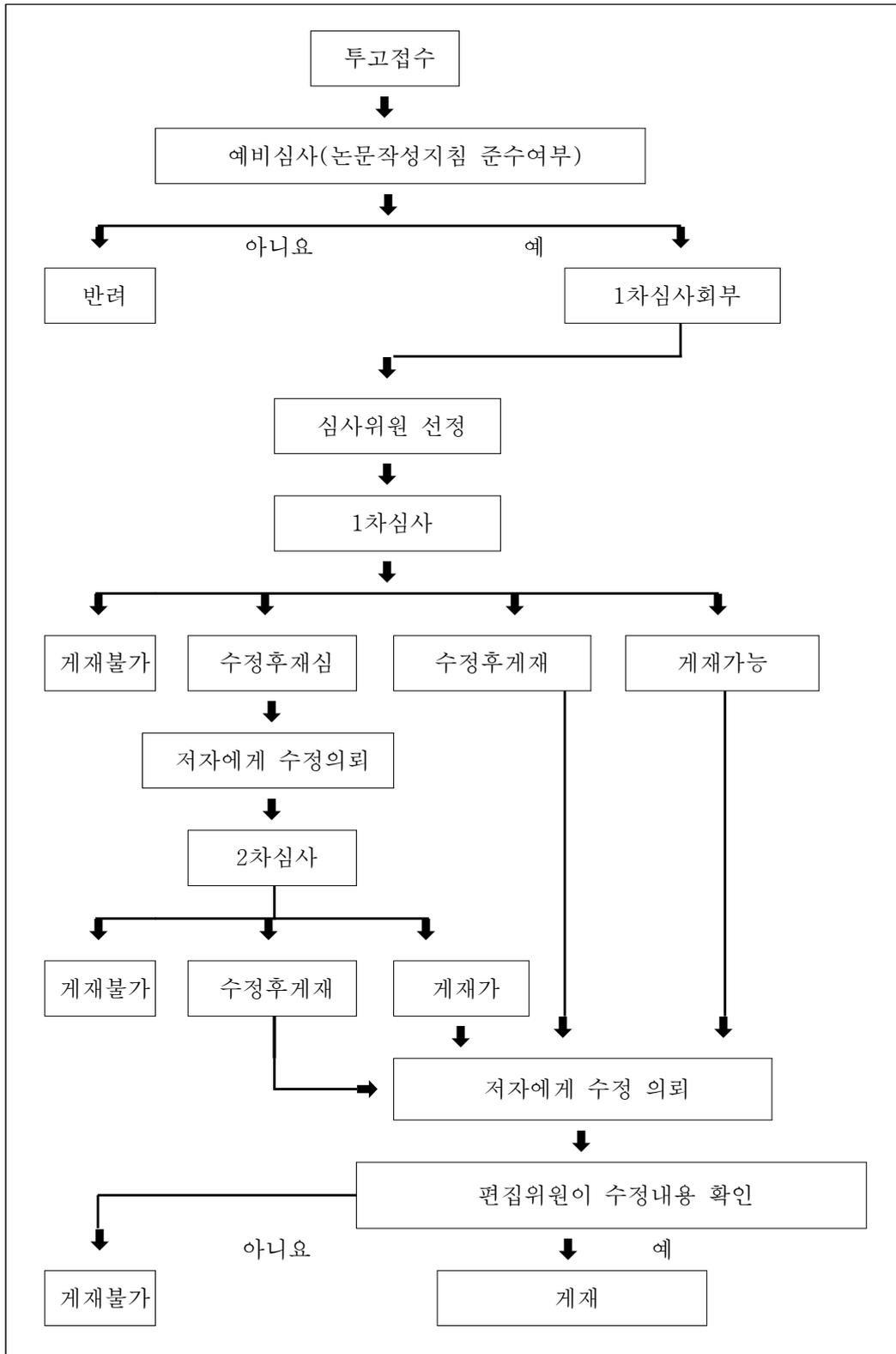
제26조(발간 및 배포) ① 학술지는 1년에 2회 발간하며 발간일자는 5월 31일, 11월 30일로 한다. 발간월 또는 발간횟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학술지의 발간부수와 배포방법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5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논문심사절차



[별표 3-양식]

논문게재 요청서 및 저작권 위임동의서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 학술지 편집위원회 귀중

논문제목 (Title of the Manuscript)

국문 :

영문 :

저자(들)는 본 논문이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 학술지 「○○○○○」에 게재되기를 희망하며 아래의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는 바입니다.

1. 저자(들)는 본 논문이 창의적이며 다른 논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2. 저자(들)는 본 논문이 귀 학술지에 게재된 후 표절로 판명되거나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으로 확인된 경우 귀 학술지의 조치에 따르겠습니다.
3. 저자(들)는 본 논문에 실제적이고 지적인 공헌을 하였으며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함께 합니다.
4. 본 논문은 과거에 출판된 적이 없으며, 현재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목적으로 제출되었거나 제출할 계획이 없습니다.
5. 본 간행물의 발행인은 저자(들)나 본 간행물 발행인의 허락 없이 타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6. 저자(들)는 본 논문이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 학술지 「○○○○○」에 게재될 경우, 본 논문에 따른 권리, 이익,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한 행사(복사·전송권 포함) 등을 한국감정원에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저자	성명	소속/직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서명
제 1 저자		/			
교신 저자		/			
공동저자 1		/			
공동저자 2		/			

[별표 4-양식]

「○○○○○○」 게재신청 논문 심사의견서

제 목					
분 야	(이론, 응용) : 부동산 정책·공시·통계·투자·금융·개발·평가·경영·관리, 녹색건축, 기타				
심 사 기 준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아주 미흡
논문의 창의성					
내용전개 논리성과 일관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연구자료의 신뢰성					
분석 또는 평가의 타당성과 객관성					
연구결과의 학술적 기여도					
논문초록(영문, 국문)의 질적 수준					
○ 논문제목의 적절성 심의 : 적절함 () 수정보완 필요 () 사유 및 수정 의견 :					
심사의견 및 수정보완 요구사항 (구체적인 기술을 요함, 필요시 별지 이용)					
1차 판정	()게재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 불가				
2차 판정	()게재가 ()수정후 게재 ()게재 불가				
심 사 위 원	소 속		심 사 일 자		성 명
	전 화				(인)
심 사 료 지급사항	주 소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은행	

심사결과통보서

먼저, 저희 학술지 「○○○○○」에 귀하의 연구논문을 투고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논문은 본 연구원 학술지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한 심사위원들이 엄정한 심사기준에 의해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논문의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최종 판정은 본 연구원 학술지편집위원회에서 확정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심 사 결 과 : 00000
2. 별 첨 : 심사의견서 1부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 학술지편집위원회

[별표 6] 논문심사 판정기준

<논문심사 판정기준>

심사결과			판정
O	O	O	게재가 / 수정후게재
O	O	△	게재가 / 수정후게재
O	O	X	게재가 / 수정후게재
O	△	△	수정후재심
O	△	X	수정후재심
△	△	△	수정후재심
△	△	X	수정후재심
O	X	X	게재불가
△	X	X	게재불가
X	X	X	게재불가

O : 게재가/수정후게재, △ : 수정후재심, X : 게재불가